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주제안권 행사기한 완화 등 제도 개선〉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63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소영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7. 14.
3. 회 부 일 : 2025.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주주총회 소집 권한은 이사회에 있고, 현재 주주들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주주제안권이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주주제안권은 법률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권한사항에 한하여 가능한데, 주주총회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도 주주제안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권고적 효력을 가진 주주제안권 특례를 도입하여, ESG 등 경영진과 소수주주들 간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일반적 주주제안을 하려면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데, 주주총회 소집공고 또는 통지일로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이 6주가 되지 않는 경우 주주제안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간 요건을 3주 전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363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및 취지

□ 개정안은 ① 전체 회사에서의 주주제안권의 행사기한을 완화하는 한편(총회일 6주 전→3주 전, 안 제363조의2), 상장회사 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에 있어서는 ②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와 관련된 기간(6개월 전→2개월 전) 및 지분(1% 또는 0.5%→0.1%) 요건을 각각 하향하고(안 제542조의14제1항), ③ 이 법과 정관에서 총회의 권한 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내용에 관하여도 총회가 구속력 없는 결의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주주제안(이른바 “권고적 주주제안”)을 허용하며(안 같은 조 제2항), ④ 기제출한 주주제안과 관련된 안건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우 행사기한에도 불구하고 5영업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으로(안 같은 조 제3항), 주주제안권의 행사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고 환경·사회·거버넌스 등의 문제에 관하여 경영진과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현행	개정안
第363條의2(株主提案權) ①議決權 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式 總數의 100分の 3 이상에 해당	第363條의2(株主提案權) ①----- ----- -----

현행	개정안
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u>6주</u>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株主總會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株主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u>6주</u>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會議의 目的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株主가 제출하는 議案의 要領을 第363條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③ (생략) <u><신 설></u>	----- ----- ----- ----- -----<u>3주</u>----- ----- ----- ----- -----. ②----- -----<u>3주</u>----- ----- ----- ----- ----- -----. ③ (현행과 같음) <u>제542조의14(주주제안권에 관한 특례) ① 2개월 전부터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1항에 따</u>

현행	개정안
	<u>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u> <u>② 제361조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상장회사는 당해 의안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u> <u>③ 상장회사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정과 결정에 대한 사유를 제542조의4 제1항의 방법으로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

현행	개정안
	④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을 한 자는 이사회에서 당해 의안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다.

2. 주주제안의 의의와 요건 등

(1) 주주제안권의 개념 및 취지

□ 현행법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제안권을 규정하고 있음(제363조의2).¹⁾

○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원하는 의안을 직접

1)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안할 수 있게 하는 보다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주총회를 활성화하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취지의 제도로²⁾ 1998년 이 법 개정시 도입되었음.

(2) 행사 가능 소수주주의 요건

- 개별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0.5%)을 보유하여야 함(제542조의6제2항).³⁾

(3) 주주제안권의 행사기한

- 주주제안권은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6주 전까지 행사할 수 있음(제363조의2제1항).⁴⁾⁵⁾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0.자 2021카합20285 결정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 등 개최 절차를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의 주주제안의 보완마저 원천적으로 불허한다면, 회사 경영상의 정보와 기초자료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는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제한하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주주제안 제도 자체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

3)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4)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 한편,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은 원칙적으로 총회일 2주 전까지
이나(제363조제1항 및 제524조의4),⁶⁾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안
하기 위한 주주제안권 행사기간을 총회일 6주 전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이사회가 주주제안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
음.⁷⁾
- 이와 더불어, 주주제안권 행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당초의 내
용과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기재출한 최초 주주제
안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하급심 판례의 입장임.⁸⁾

있다.

- 5) 만약 주주가 6주 전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주주제안권을 행사한 경우, 다시 말해 총회일로
부터 6주 이내에 주주제안을 한 경우에는 6주 이후에 열리는 차기의 주주총회에서라도 다루어
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는 해당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제안 내용상 차
기 주주총회에서 다루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해당 주주의 보유 요건이 이후까지 충족되
어 있는 경우 차기 주주총회에 대한 제안으로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임. 실무상으로 주주
제안서면에서 “별지 기재 의안을 귀사가 최초로 소집하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정기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한다고 기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 6)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
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
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광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
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0.자 2021카합20285 결정
-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0.자 2021카합20285 결정 “이 사건 최초 안건과 변경 안건 사이에는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고 이 사건 변경 안건은 최초 안건을 일부 보완한 것에 그친다고 평가
할 수 있는바, 채권자가 채무자 발행주식 총수의 3%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서
2020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6주 전에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최초 안건을 상정
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채권자에게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 이 사건 변경 안건의 상정을 구할 수 있는 피
보전권리가 있다.”

(4) 주주제안의 처리 절차

- 주주제안을 받은 이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함(제363조의2제1항·제3항).⁹⁾

(5) 주주제안의 내용

- 주주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이 될 수 있는 일정한 사항으로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3년 내 찬성 10% 미달로 부결된 의안,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및 실현불가능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됨(제363조의2제1항·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¹⁰⁾

9)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0)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법 시행령」 제12조(주주제안의 거부)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같은 내용

- 다만, 주주총회는 이 법¹¹⁾ 또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한정하여 의결권한이 있으므로(제361조제1항),¹²⁾¹³⁾ 주주제안의 경우에도 이 법 또는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구속적 사항만을 제안할 수 있음.
- 따라서 주주제안으로 올라온 의안이 주주총회에서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거나 경영진에게 구속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형태의 주주제안인 “권고적 주주제안”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주주제안이 가능하다고 정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¹⁴⁾를 제외하고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¹⁵⁾

의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인 경우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인 경우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인 경우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 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인 경우
- 11) 이 법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한 것은 ① 회사의 근본적인 변경에 관한 사항(정관변경, 합병, 영업양수도,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자본금의 감소 및 해산), ② 회사기관의 임면(이사, 감사, 청산인 등의 임면) 및 ③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회의의 속행과 연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12)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 1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위 1988.9.21.의 주주총회결의가 원고에 대한 초과금액 지급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무효로 하고, 피고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결의를 한 것이라고 하여도, 이로써 일단 원고와 적법하게 한 약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유효하게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14) 한편, 이와 같이 정관에서 별도의 권고적 주주제안 제도를 창설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주주제안권 행사와 다른 층위의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존재함.
- 15) 현재 권고적 주주제안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이라는 형태로 다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됨(2022. 3. 29. 개최된 H기업 주주제안)

(6) 관련 해외 입법례

-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주주제안권과 관련된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구분	미국 ¹⁶⁾	영국 ¹⁷⁾	독일 ¹⁸⁾	일본 ¹⁹⁾
행사 기한	기준일 ²⁰⁾ 120일 전	총회일 6주 전 또는 통지시점 ²¹⁾	총회일 24일 또는 30일 전 ²²⁾	총회일 8주 전 ²³⁾
주주 요건	보유기간별 차등 요건 ²⁴⁾	지분 또는 인원 요건 ²⁵⁾	지분 또는 가액 요건 ²⁶⁾	보유기간 및 의결권 요건 ²⁷⁾
권고적 제안	가능 ²⁸⁾	가능 ²⁹⁾	제한 ³⁰⁾	제한 ³¹⁾
제출후 수정	미규정 ³²⁾	미규정	미규정	미규정

내용	설명
전문 신설	안전경영 등 회사 의무, 독립적 지위의 이사회의 책임, 건전한 지배 구조 개선 명시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전체 주식의 0.1%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주는 ESG 관련된 사안에 한하여 권고적 주주제안을 할 수 있 으나 회사에 구속력은 없음
안전보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이사회 내 위원회로 안전, 보건, 품질 정책을 수립, 이행감독, 평가 및 책임을 부담하는 안전보건위원회의 신설
지속가능 경영공시	정기 주주총회 1주 전까지 홈페이지 및 공시시스템에 공고, 소액주주 의견 수렴
부칙	변경되는 정관은 제4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인되는 날부터 시행

16) 17 CFR § 240.14a-8 - Shareholder proposals.

17) Companies Act 2006, s 338(4)

18) 독일 주식법 제122조

19) 일본 회사법 제303조

20) 17 CFR § 240.14a-8(e)에 따르면, 전년도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위임장설명서 발송일(the date of the company's proxy statement released to shareholders in connection with the previous year's annual meeting)이 기준일임.

21) Companies Act 2006, s 338(4)(d)에 따르면, 주주제안과 관련된 정기주주총회 6주 전 또는 그 보다 늦은 경우에는 해당 총회일의 통지시점까지(Companies Act 2006, s 307(2)(a)에 따라 최소 21일 전까지)임.

3. 구체적 검토

(1) 주주제안권 행사기한을 총회일 6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완화(안 제 363조의2제1항 및 제2항)

□ 안 제363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주주제안권의 행사기한을 완화하는(총회일 6주 전→3주 전) 내용으로, 현행 기한이 주주제안권의

-
- 22) 독일 주식법 제122조제2항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총회일의 24일 전까지 도달해야 하고,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30일 전까지 도달해야 함.
- 23) 일본 회사법 제303조제2항 및 제305조제1항
- 24) 17 CFR § 240.14a-8(b)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보유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가능함.
(1) 3년 이상 보유 및 시장가치 기준 2,000달러 이상, (2) 2년 이상 보유 및 15,000달러 이상 또는 (3) 1년 이상 보유 및 25,000달러 이상
- 25) Companies Act 2006, s 338(3)에 따르면, 주주제안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가능함. (1) 최소 5%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자기주식 제외)을 보유한 주주 또는 (2) 1명당 평균 최소 100파운드 가액 이상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한 최소 100명 이상
- 26) 독일 주식법 제122조제2항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 또는 50만유로 이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지분을 보유한 주주여야 함.
- 27) 일본 회사법 제303조제2항 및 제305조제1항은 ① 1% 또는 300개 이상의 의결권(의결권 요건)을 ②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우(보유기간 요건, 이사회설치회사 중 공개회사 한정)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 28) 17 C.F.R. § 240.14a-8(i)(1)(note to paragraph (i)(1))에 따르면, 해당 주주제안이 회사를 관할하는 주법(洲法)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가 달리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주주의 구속력 없는 권고 또는 제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29) Companies Act 2006, s 338(2)에 따르면, 해당 주주제안(resolution)이 총회에서 처리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경우나 명예훼손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제안이 가능함. 다만,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의 보수에 관해서는 주주제안권과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 규율되고 있음. Companies Act 2006, ss 439(5) and 439A에 따르면 상장회사(quoted company)에서 이사의 보수보고서(remuneration report)에 관한 승인은 비구속적 결의이나, 보수 정책(remuneration policy)에 관한 승인은 구속적 결의임.
- 30) 독일 주식법 제119조는 우리와 동일하게 주주총회의 권한을 법률과 정관에 명시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다만, 이사의 보수 결정과 관련해서는 제120a조는 상장회사의 주주총회는 최소한 4년 마다 보수체계의 모든 주요한 변경사항의 경우에 감사회가 제출한 이사들에 대한 보수체계의 동의에 관한 결의를 하고, 해당 결의는 권리도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31) 일본 회사법 제295조제2항에 따르면, 이사회설치회사의 주주총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및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정하여 결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32) 다만, 17 CFR § 240.14a-8(f)는 회사가 해당 주주제안에 기재된 자격 또는 절차적인 요건(eligibility or procedural requirements)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며, 해당 주주는 14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 재송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실효적인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개정안 통과시 회사에 게 적정한 주주제안의 적격성 검토기간³³⁾이 부여될 수 있는지³⁴⁾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회사가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바(제365조제3항),³⁵⁾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로서는 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의결(제362조)³⁶⁾ 전까지 기한 충족 또는 도과 여부를 알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주주총회의 종류에 따라 행사기한을 구분하여 규율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상장회사 주주제안권 행사 보유요건 하향(안 제542조의14제1항)

-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제안을 위한 소수주주의 주식 보유기간(6개월 이상→2개월 이상) 및 비율요건(1% 또는 0.5% 이상→0.1% 이상)을 하향 조정하려는 안 제542조의14제1항은, 현재도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비율요건 자체는 일반 주식회사(3%

33) 주주총회는 제362조에 따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소집되는데, 해당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해서도 결정하여야 함. 한편, 주주총회는 제363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하는바, 개정안과 같이 행사기한을 총회일 3주 전으로 단축하게 되면 주주제안권 검토기간 및 이사회 의결이 최소 1주 내에 이루어지게 됨.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0.자 2021카합20285 결정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은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관하여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에서 주주제안권 행사 기간을 주주총회일의 ‘6주’ 전으로 제한한 취지는,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준비 기간은 물론 이사회로 하여금 주주제안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필요성을 고려한 것이다.”

35)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③ 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36)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 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이상)보다³⁷⁾ 완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됨.

- 다만,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제안권 행사 보유요건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제542조의6제2항을³⁸⁾ 삭제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를 법제적 측면에서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도 추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상장회사의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안 제542조의14제2항·제3항)

- 안 제542조의14제2항·제3항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한 주주제안을 허용하는 한편 회사가 해당 의안에 대한 결의의 이행 또는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회사가 결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공고(제542조의4제1항³⁹⁾)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권고적 주주제안”

37) 「상법」 제363조의2(주주제안권) ①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주는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회의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당해 주주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제363조에서 정하는 통지에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는 제1항에 의한 주주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주제안을 한 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8)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2조(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을 명문으로 도입하려는 내용임.

○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은, 환경·사회 및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안에 관한 주주들의 충의를 확인하거나 투자자 등에게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비전 등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기업 가치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경영권 침해 또는 주주총회 의사진행 방해 등을 위하여 남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⁴⁰⁾

(4) 기제출한 주주제안의 예외적 사후수정 허용(안 제542조의14제4항)

□ 안 제542조의14제4항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에서 기제출한 주주제안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에는 행사기한이 도과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이사회 결의 후 5영업일 이내에 그 의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경영진이 해당 제안을 무력화하기 위한 추가안건을 함께 상정하는 등의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⁴¹⁾이므로, 주주제안권의

39)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40) 따라서 이러한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고적 주주제안에 있어서는 일반 주주제안과 별도의 지분 보유요건 등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실효적 행사를 담보하기 위한 긍정적인 측면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그 허용 요건 중 핵심적인 부분인 “이사회에서 당해 의안과 관련된 안건이 의결된 경우”의 해석을 위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 및 내용의 추가보완 또는 위임입법 등을 통한 보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관계 기관 등의 의견

- 상장회사협의회는 개정안의 개별적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내용	의견
주주제안권 행사기한 완화	총회 준비 및 주주와 소통을 위한 기간 고려할 때 3주로 완화하는 것은 과도함
상장회사 주주제안권 행사 보유요건 하향	일부 주주의 경영권 간섭 및 권리 남용 빈발 우려로 반대함
상장회사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특정 주주 집단의 이익을 위한 주주총회’로 변질될 우려 등이 있어 반대함

41) 이와 관련하여,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주주제안권을 행사한 소수주주)들은 이사회가 제안한 의안이 가결될 경우 해당 주주제안이 자동 폐기됨으로써 그 상정 자체를 저지시킬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의안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제안한 것은 주주제안의 안건상정을 막으려는 지배주주의 주주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자 2023카합21498 결정)은 이 법 제363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호는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할 권리를 주주제안의 형식으로 행사함으로써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요건을 잠탈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의 조항이므로, 다른 주주가 제안한 의안의 내용에 반대될 수 있는 의안을 주주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5